산업통상자원부
MINISTRY OF TRADE, INDUSTRY & ENERGY
http://www.motie.go.kr

보 도 자 료

희망의 대한민국
경제혁신 3개년 계획
3년의 혁신, 30년의 성장

2014년 12월 18일(목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문의: 규제개혁TF팀 배준형 팀장(044-203-5590), 권용균 주무관(5569)

내년 2월까지 공공기관 유사규제 마무리

- 내년 2월까지 입찰·계약 관련 2단계 과제(317건) 마무리 -
- 중소기업·창업기업 등에 입찰문턱 대폭 낮춰 -

□ 산업통상자원부 공공기관의 유사규제 개선을 내년 2월까지 모두 마무리 하기로 했다.

○ 산업부 소관 공공기관들은 지난 7월부터 '숨은 유사규제'와 '비합리적인 제도 개선과제'를 총 524개 발굴·확정한 후, 개선을 추진해 왔다.

* 524개 과제 : ① 각 기관이 3차례에 거쳐 자체적으로 발굴한 432개 (단, 산업부 검토결과 국민·기업에 영향이 미미한 내부 사항은 제외), ② 전경련 등 주요 단체·협회 건의사항 수용 과제 8개, ③ 조달연구원 용역으로 도출한 공통 적용 가능 과제 중 84개

○ 우선, 1단계로는 공공서비스 및 기타 업무관련 과제(207개)를 지난 10월부터 우선 추진해 왔으며, 현재까지 71%가 완료된 상태임

* 추진현황('14.11.30일 기준) : 완료(148개, 71%), 추진 중(12월 완료 예정 50개, '15.2월 예정 9개)

○ 2단계로, 입찰·계약 관련 과제(317개)를 지난 11월 기재부와의 협의를 거쳐 최종 확정하고 진행 중이다.

* 입찰·계약 관련 규정 중 「공기업·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」과 달리 정하는 내용은 기획재정부 승인 필요(공기업·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2조)

□ 2단계 제도 개선으로 진행 중이거나 추진 예정인 대표 과제 및 기대 효과는 다음과 같다.

① 입찰·계약 관련 진입장벽 및 기업부담 완화.

○ 한국수력원자력과 산업기술진흥원 등은 중소기업을 위해 품질에 영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실적 요건을 완화했다.

	현 행	개 선 안
실적 인정 범위	▪ 참여희망업체 시공실적 중 입찰대상 공사비의 1/3 이하는 인정 불가	▪ 소규모 입찰공사 등의 경우, 입찰대상 공사비의 1/3 이하 시공실적도 인정 가능
인정 기간	▪ 실적 인정 기간이 최근 3년 내 수주한 실적만 인정	▪ 실적 인정 기간을 최근 5년 내 수주한 실적까지 확대

- 또한 창업기업·장애인 기업 등에 대한 입찰 평가 우대 등으로 진입장벽을 완화한다.

현 행	개 선 안
▪ 물품구매 적격심사 시 창업기업 및 장애인 기업 등의 경우 납품이행 실적 등이 적어 낮은 점수 획득 * 예) 납품실적 점수(기본점수 2.0), 경영상태 점수(신용등급별 22~27점)	▪ 창업기업, 장애인 기업의 입찰 진입 완화를 위해 납품실적, 경영상태점수 등에 기본점수* 상향 * 예) 납품실적 점수(기본점수 3.0), 경영상태 점수(창업기업 27점 부여)

○ 또한, 기존에 품목이나 정비 발주가 유사함에도 발전 5사가 개별적으로 운영함으로 인해 발생되던 협력업체의 등록·신청, 평가과정에서의 번거로움과 부담을 하나의 등록·관리체계로 통합함으로써 줄였다.

현 행	개 선 안
▪ 기자재 공급자 관리지침 ▪ 정비적격업체 관리지침 (발전사별 개별 기준 운영)	▪ 공통품목(51개) 세부규격 표준화 ▪ 「발전5사 통합 유자격 관리기준」 제정 ▪ 유자격 통합관리 시스템(Easy-U) 운영 - 1개사 신청 후 발전5사 공동인증

* 유자격 등록관련 비용 연간 25억원 절감 예상(업체 18.5억원, 발전사 6.5억원)

② 입찰·계약 관련 협력업체와의 상생협력 확대.

○ 남부발전 등은 단가계약시 최소 납품수량을 정하고 실제 구매량이 최소 수량에 도달할 때까지는 계약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여 협력업체가 안정적 거래수요를 확보하도록 했다.

현 행	개 선 안
▪ 계약기간은 필요한 경우 상대자와 협의하여 연장 또는 단축 가능	▪ 단가계약 종료시까지 최소납품수량에 도달하지 아니할 때에는 최소 납품 수량 도달시 또는 종료 후 6개월시점 중 먼저 도달하는 때까지 계약기간을 연장

③ 입찰·계약 관련 자료수집 의무 완화.

○ 중부발전 등은 공사 및 계약 관련 입찰서류 등의 수량과 종류를 최소화하여 자료수집 의무를 개선하도록 했다.

	현 행	개 선 안
부수 완화	▪ 계약 시 산출내역서 4부	▪ 계약 시 산출내역서 1부
종류 완화	▪ 재공고 입찰참가 시 신청서류(12개) 재제출	▪ 재공고 입찰참가 시 신청서만 제출

④ 입찰·계약 관련 안전관리 내실화.

○ 남부발전은 추정가격 4천만원 미만인 공사에 대해서도 산업안전보건관리비*를 별도로 계상하여 자금력이 열악한 중소기업의 입찰 공사에 대해 안전관리를 내실화하기로 했다.

*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제도 : 안전모 등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사용하도록 사업비의 일부를 미리 계상하는 제도 (남부발전이 공사 입찰 기업에게 사업비에 추가하여 지급)

현 행	개 선 안
▪ 추정가격 4천만원 이상인 공사의 경우에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별도 계상	▪ 4천만원 미만인 공사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별도 계상

□ 산업부는 국민과 기업들의 규제개혁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공공기관 유사규제 개선과제를 '15.2월까지 모두 완료하기로 하고 추진상황에 대해서도 매달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차질없이 시행하기로 했다.

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규제개혁TF팀 배준형 팀장(☎ 044-203-5590), 권용균 주무관(☎ 044-203-5569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